

# 산재보험 혜택을 그대로

- 중·소기업 사업주 가입 특례 -

## 제도취지

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·소기업 사업주(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)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제도 운영



## 산재보험 가입

### • 가입대상

- >>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
- >>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
  -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(명의이용 운송차주 제외)
  -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(지입차주 포함)
  - ③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(건설기계대여업자만 해당,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제외)
  - ④ 퀵서비스업자
  - ⑤ 비전속 퀵서비스기사(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)
  - ⑥ 예술인(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)

### • 보험가입자 :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자 본인(임의가입 방식)

※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여 보험가입 가능(별도 비용 없음)

### • 가입신청 : 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

- ※ 분진·진동·연 및 유기용제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필요
- ※ 예술인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 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,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을 증명받은 내용을 같이 제출

### • 가입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토탈서비스(<http://total.kcomwel.or.kr>) 이용하여 직접 가입

### • 보험관계 성립일 :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

### • 계약해지 :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(단,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)

## 보험료 산정 및 납부

### • 월 보험료 = 월 보수액 × 산재보험료율

### •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0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(연도 중 변경 불가)

※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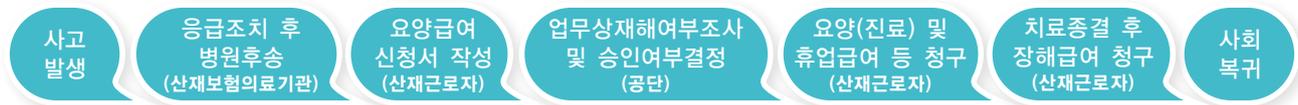
### • 산재보험료율 : 직종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 적용

**[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]**

구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일)	구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일)
1등급	1,250,400원	41,680원	6등급	2,110,000원	70,333원
2등급	1,395,180원	46,506원	7등급	2,310,000원	77,000원
3등급	1,540,000원	51,333원	8등급	3,349,170원	111,639원
4등급	1,730,000원	57,666원	9등급	4,388,370원	146,279원
5등급	1,920,000원	64,000원	10등급	5,427,570원	180,919원

- **보험료 부담** : 보험에 가입한 중·소기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(자동이체 이용시 매월 250원 할인)
- **보험료 납부기한** : 매월 10일
  - ※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(다만,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)

**재해발생시 산재보상 청구 절차**



※ 중·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: 출·퇴근 중의 재해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동일

**산재보험이 드리는 혜택**

요양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치료비는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·수령</li> <li>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요양승인 후에 우리 공단에 요양비로 청구</li> </ul>
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%를 휴업급여로 지급</li> <li>• 요양기간이 2년이상 경과하고,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급~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</li> <li>※ 61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연령별로 일정비율 감액 지급</li> </ul>
장해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(제1급~제14급)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</li> </ul>
유족급여 장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</li> <li>•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%는 일시금 지급</li> </ul>
간병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(치료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)</li> </ul>
직업재활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재장해인(장해 제1급~제12급)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</li> </ul>
기타 복지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(장해 제1급~제7급), 대학학자금 융자(장해 제1급~제9급), 생활안정자금 융자(장해 제1급~제9급) 등의 혜택을 일정 요건 하에 부여</li> </ul>